

<별지1호 서식: 붙임3> 개정 규정 전문**2-2-27 시험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수대학교 학칙 제48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2조와 성적평가 및 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의한 각종 시험의 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감독, 부정행위 예방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행위) 시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답안지의 교환, 답안지 투입 또는 답안지의 유통 행위
3.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 작성에 도움을 주고 받는 행위
4.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전자·통신기기 또는 무전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5. 문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거나 유포시키는 행위
6.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
7.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 답안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입하는 행위
8.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9. 시험시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10. 시험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3조(시험관리 등) ① 시험문제 출제, 관리, 배포 등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 부정행위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사무실, 교무처로 제보 또는 제안할 수 있다.

③ 시험 감독관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직원 및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천한 자가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시험감독관의 임무) 시험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시작 전에 시험 유의사항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내용 안내
2.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3. 부정행위 적발시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
4. 시험시간 및 시험지 등의 관리

제5조(부정행위 조치) ①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내용을 확인하고, 답안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자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험감독관 확인사항까지 작성하고 증거물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학생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부장은 진상을 조사한 후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식에 학부 조사 내용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④ 시험부정행위로 확인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0점)”로 처리한다. 단, 시험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할 때에는 징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5.>

제6조(성적 산출근거 보관 및 보존) 교과목 담당 교수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시험답안지 등)를 5년간 보관한다. 단,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경우 전공교과목은 각 학부에서, 교양 교과목은 교무처에서 5년간 보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